수 원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지방재정법위반 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나.다. D 5.나.다. E 6.나.다. F 7.나.다. G 8.나.라. H 9.나.라. I 10.나.다. J 11.나.다. K 12.나.다. L	

13.나.다. M

14.나.다. N

15.나.다. O

16.나.다. P

17.나.다. Q

18.나.다. R

19.나.다. S

20.나.다. T

21.나.다. U

22.나.라. V

검 사 김준엽(기소), 임현진, 신승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김광표, 김용섭, 최호진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양호준 (피고인 B, C, D, E, H, P, Q, S, U을 위하여)

변호사 남궁성배 (피고인 F,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류민옥 (피고인 I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피고인 J, K, L를 위하여)

법무법인 지오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고인 M를 위하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담당변호사 김용찬 (피고인 N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성일 (피고인 O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덕

담당변호사 윤기찬, 정아현 (피고인 R을 위하여)

변호사 이승현 (피고인 T, V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천군, 화성시, 안성시, 파주시, 고성군, 부여군, 강릉시, 영주시에 대한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B, D, J, K, L, M]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E, F, G, H, I, N, O, P, Q, S, T, U, V]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팔탄면(주소생략)에 위치한 산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및 축분고속발효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 J, K, L, M, R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가의 농장주 또는 해당 축산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하 통틀어 '축산농가운영자'라고 한다)이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화 농업활성화, 수질·토양 등 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위해 각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이 포함된 축분고속발효기의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운영자 중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있는 축산농가운영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게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축산농가운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총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도 W에 지급된 자부담금 중 일부를 축산농가운영자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마치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자부담금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W의 영업사원은 2018. 5. 8.경 양주시 은현면 (주소생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X」에서 피고인 B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축분고속발효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50%인 7,500만 원은 본래 축산농가인 「X」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단 W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다른 계좌를 통해 그 중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8. 6.경 양주시청에 마치 위 「X」의 피고인 B이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한 후 2018.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양주시로부터 지방보조금 7,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J, K, L, M, R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양주시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평택시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산군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공문, B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청구서, B이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D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D의 보조금 청구서 및 신청서, D가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J 등 5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문, J의 보조금청구서, J이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K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문, K의 보조금청구서, K이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L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문, L의 보조금청구서, L가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Z 등 3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문, Z의 보조금청구서, Z이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R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문, R이 W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R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양주시, 평택시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2],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양주시, 금산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해자 양주시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양주시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양주시에 대한 부분을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한다.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평택시에 대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D, J, K, R][3)]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L, M][4)]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양주시, 금산군에 대한 각 사기죄와 이에 대응하는 각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평택시에 대한 사기죄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J, K, R]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L, M]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9, 10, 17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평택시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W로부터 수령한 2,500만 원은 다른 축산농가를 W에 소개시켜주고 그 후 계약이 성사되어 지급받은 일종의 소개비일 뿐, W가 피고인에게 반환한 자부담금이 아니다. 피고인이 W 측과 자부담금 환급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로부터 축분고속발효기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할인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축분고속발효기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금산군청에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9. 3. 6.경 W로부터 축분고속발효기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순번 86).

2) 피고인은 W의 계좌로 2019. 3. 8. 3,000만 원, 2019. 3. 12.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3. 13. W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증거순번 85 제6, 7면, 증거순번 224 제5, 6면).

3) 피고인은 2019. 3. 28. 축분고속발효기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임을 전제로 금산군청에 지방보조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2019. 4. 9. 지방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순번 85, 증거순번 224 제9면).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축분고속발효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W의 영업사원 Y로부터 축분고속발효기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할인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축분고속발효기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2019. 3. 6.경 Y과 축분고속발효기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싸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주변 농장들이 1억 2,00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W의 축분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 싸게 해달라고 하였다', '2,500만 원을 싸게 해주기로 해서 약속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24, 제6면). Y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39 제11면).

2) Y은 이 법정에서 농장주에게 소개비를 주는 경우 그 금액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선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A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소개비로 1,000만 원 이상 지급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인 Y의 증언녹취서 제22면,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6면 참조). 실제로 피고인이 매수한 축분고속발효기가 1억 2,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환받은 돈의 액수는 일반적인 소개비라고 보기에 상당히 고액이다.

3)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농장주들을 소개받거나 미팅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Y의 증언녹취서 제19면). 또한 피고인은 2019. 3. 6.경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2.까지 W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9. 3. 13. W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이 약 일주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 체결 후 W에게 다른 농장들을 소개하고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이 사

건 범행의 액수와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실무를 담당한 영업사원들이 축분고속발효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 J, K, L,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D, K, L, M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W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등 14명은 축산농가운영자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화 농업활성화, 수질·토양 등 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위해 각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이 포함된 축분고속발효기의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운영자 중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있는 축산농가운영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게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 축산농가운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총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도 W에 지급된 자부담금 중 일부를 축산농가운영자에게 대여해 줄 것 등을 약속하고 마치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자부담금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는 2018. 6.경 양주시청에 마치 'AA농장'의 피고인 C가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양주시로부터 지방보조금 7,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E, F, G, H, I, N, O, P, Q, S, T, U, V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양주시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천군으로부터 7,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7,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안성시로부터 7,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6,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6,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부여군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1억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7,500만 원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4 내지 8, 14,

15, 16, 18, 20, 2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5]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고 한다)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가운영자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운영자가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부담의 외형만을 갖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이는 구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검사도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업비(자부담금)를 축산농가운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축산농가운영자가 최종적·실질적으로 그 사업비(자부담금)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이를 부담하였다면, 그 비용을 마련하게 된 경위가 차용 등 타인의 자금을 활용한 것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를 자부담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보조금교부결정서 또는 위 결정서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조건[6]에도 자부담금을 반드시 보조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제3자로

5) 피고인 A, C, E, F, G, H, I, O, P, Q, S, U, V
6) 피해자 양주시: 증거순번 105, 110, 152
피해자 화성시: 증거순번 33

부터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자부담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기타 자부담금 조달방법 제한 규정 또는 관련 지침 등도 확인하기 어렵다. 화성시에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담당하였던 BB은 이 법정에서 '당시 보조금 청구자들에게 설치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서약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고 고성군에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담당하였던 증인 CC도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빌려서 납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BB의 증언녹취서 제7면, CC의 증언녹취서 제11면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할부금 상환 확약서, 대여금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고(증거순번 160) 차용금도 대부분 이 사건 수사개시 전에 전액 변제되었다[7](증거순번 27, 141, 156, 235, 236, 257, 261, 269, 270, 2025. 5. 23.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의 1, 2).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실질적인 자부담금 부담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N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피해자 안성시: 증거순번 82
피해자 파주시: 증거순번 127
피해자 고성군: 증거순번 73
피해자 강릉시: 증거순번 38
피해자 영주시: 증거순번 76

7) 피고인 F은 W에 직접 수리한 지방공사비 300만 원을 제외하고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Q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W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W에 중고 축본고속발효기를 매도하면서 3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08 제11면, 증거순번 288).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W로부터 축분고속발효기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지방보조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N가 최종적·실질적인 자부담금 부담 의사를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악취저감시설의 성능 문제로 인하여 W로부터 해당 비용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가) 피고인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축분고속발효기 2대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다가 W와 다시 악취저감시설이 포함된 축분고속발효기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주변에서 W에서 설치하는 악취저감장치는 악취를 잘 없애지 못하고 사용기간도 길지 않다고 하여 직접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31 제6면, 피고인 N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1면 참조).

나) 실제로 피고인 N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8. 7.경부터 10.경까지 W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것만 29,739,000원에 이른다(증거순번 239).

피고인 N가 지방보조금 청구당시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다른 공사업자와 접촉하였던 정황은 찾기 어렵고 피고인 N가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절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N가 W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은 시기도 2018. 11. 14.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이후이다.

다) W의 영업사원 DD는 이 법정에서 'W에서 축분고속발효기와 악취저감장치가 세트로 나가는 지원사업이었는데, 피고인 N가 악취저감장치의 성능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저희한테 악취저감시설을 따로 설치하겠다며 4,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74 제11면, 증인 DD의 증언녹취서 제3면 참조). 이와 같은 W 측의 진술도 앞서 본 피고인 N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3) 피고인 T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검사는, 피고인 T가 W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마련하였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지방보조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8]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T가 W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찾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T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축분고속발효기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450만 원을 W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T는 'W에서 축분고속발효기 설치 공사를 하며 지붕을 뜯어서 이를 다시 설치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W에 나머지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증거순번252 제7, 9면 참조), 축분고속발효기 매매대금 지급 시기 내지 기지급액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 T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은 찾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 T가 W에게 축분고속발효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계약 이행 과정 중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를 들어 피고인들

8) 피고인 A, T

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연천군, 화성시, 안성시, 파주시, 고성군, 부여군, 강릉시, 영주시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 E, F, G, H, I, N, O, P, Q, S, T, U, V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의 양주시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 D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의 대표이사이고 B 등 8명은 양주시 내의 축산농가운영자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화 농업활성화, 수질·토양 등 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위해 각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이 포함된 축분고속발효기의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운영자 중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있는 축산농가운영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자인 축산농가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게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B 등 축산농가운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총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W에 지

급된 자부담금 중 일부를 축산농가운영자에게 대여해 줄 것을 약속하고 마치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운영자가 자부담금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경 양주시청에 마치 「X」 의 B이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방보조금 7,5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무죄부분의 '제1의 나. 1)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 E, F, G, H, I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합계 1억 5,000만 원)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B, D 부분을 유죄

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 박건창 _____

판사 최종헌 _____

판사 정현재 _____

[별지]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시설 사업장)	시행처 (피해자)	축산농가 (운영자)	피해액 (보조금)	범행방법	보조금 지급일
피해자 양주시							
1	'18.6.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265-1 (X)	양주시청	B (남, 73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마치 B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B에게 1,300만원 반환)	'18. 6. 29.
2	'18.6.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384번길 11-13 (AA농장)	양주시청	C (남, 67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마치 C가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C에게 6,500만원 대여)	'18. 6. 29.
3	'18.12.경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225 (키움팜농장)	양주시청	D (남, 73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마치 D가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D에게 12,571,000원 반환)	'18. 12. 21.
4	'19.4.경	경기 양주시 봉 합 리	양주시청	E (여, 63세)	**75,000,000** (경기도	마치 E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	'19. 4. 30.

		465-3 (정은농장)			30,000,000, 양주시 45,000,000)	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E에게 5,000만원 대여)	
5	'19.4.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236-1 (은성농장)	양주시청	F (남, 59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마치 F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F에게 5,000만원 대여)	'19. 4. 30.
6	'19.4.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326-18 (형제농장)	양주시청	G (남, 45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마치 G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G에게 5,000만원 대여)	'19. 4. 30.
7	'21.7.경	경기 양주시 남면 신암리 241-3 (광개토목장)	양주시청	H (남, 56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마치 H가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H에게 5,000만원 대여)	'21. 7. 29.
8	'21. 7.경	경기 양주시	양주시청	I	**75,000,000**	마치 I이 자부담금 7,500	'21. 8. 23.

		봉 양 동 580-1 (장흥농장)		(남, 56세)	(경기도 30,000,000, 양주시 45,000,000)	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I에게 6,000만원 대여)	
				합계	**600,000,000**		
피해자 평택시							
9	'18.6.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평궁1길 21 (야곱목장)	평택시청	J (남, 67세)	**70,000,000** (경기도 14,000,000 평택시 56,000,000)	마치 J이 자부담금 7,0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J에게 1,000만 원 반환)	'18. 6. 22.
10	'18.11.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 안재흥로 224-24 (해송목장)	평택시청	K (남, 66세)	**70,000,000** (경기도 14,0000,000평택시 56,000,000)	마치 K이 자부담금 7,0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K에게 1,000만 원 반환)	'18. 12. 11.
11	'19.11.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 장등안길 7-148 (풍년목장)	평택시청	L (남, 68세)	**70,000,000** (경기도 14,000,000 평택시 56,000,000)	마치 L가 자부담금 7,0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L에게 2,500만 원 반환)	'19. 12. 3.

12	'20.12.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 마무리 244 (승영목장)	평택시청	M (남, 42세)	**75,000,000** (경기도 15,000,000 평택시 60,000,000)	마치 M가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M에게 2,500만 원 반환)	'20. 12. 22.
				합계	**285,000,000**		
피해자 연천군							
13	'18.6.경	경기 연천군 현문로 245번길 107-36 (돈앤돈스)	연천군청	N (남, 64세)	**75,000,000** (경기도 37,500,000 연천군 37,500,000)	마치 N가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N에게 4,000만원 반환)	'18. 6. 26.
				합계	**75,000,000**		
피해자 화성시							
14	'18. 12. 19.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자청로 31번길 14 (비봉계란농장)	화성시청	O (남, 65세)	**75,000,000** (경기도 7,500,000 화성시 67,500,000)	마치 O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O에게 6,500만원 대여)	'18. 12. 26.
				합계	**75,000,000**		
피해자 안성시							
15	'19.10.경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계길 20-64	안성시청	P (남, 71세)	**75,000,000** (경기도 30,000,000	마치 P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	'19. 10. 25.

		(수곡농장)			안성시 45,000,000)	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P에게 5,500만원 대여)	
				합계	**75,000,000**		
피해자 파주시							
16	'19.12.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36 (덕신농장)	파주시청	Q (남, 68세)	**60,000,000** (경기도 18,000,000 파주시 42,000,000)	마치 Q이 자부담금 6,0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Q에게 4,000만원 대여)	'19. 12. 30.
				합계	**60,000,000**		
피해자 금산군							
17	'19.3.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사로 25 (농업회사법인(주)헬로피그농장)	금산군청	R (남, 49세)	**60,000,000** (충청남도 18,000,000 금산군 42,000,000)	마치 R이 자부담금 6,0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R에게 2,500만원 반환)	'19. 4. 9.
				합계	**60,000,000**		
피해자 고성군							
18	'20.5.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양산2길 43 (대낭목장)	고성군청	S (남, 45세)	**65,000,000** (경상남도 13,000,000 고성군 52,000,000)	마치 S이 자부담금 6,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S에게	'20. 6. 2.

						7,000만원 대여)	
				합계	**65,000,000**		
피해자 부여군							
19	'20.9.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부흥로 305-87 (성동목장)	부여군청	T (남, 66세)	**60,000,000** (충청남도 18,000,000 부여군 42,000,000)	마치 T가 자부담금 6,0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T에게 4,000만원 대여)	'20. 11. 3.
				합계	**60,000,000**		
피해자 강릉시							
20	'19.11.경	강원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325 (싱싱축산농장)	강릉시청	U (남, 71세)	**100,000,000** (강원도 30,000,000 강릉시 70,000,000)	마치 U이 자부담금 1억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U에게 1억 원 대여)	'20. 11. 29.
				합계	**100,000,000**		
피해자 영주시							
21	'21.12.경	경북 영주시 안정면 장안로 550-19 (부흥농장)	영주시청	V (남, 67세)	**75,000,000** (경상북도 22,500,000 영주시 52,500,000)	마치 V이 자부담금 7,500만원을 전부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증 등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사실은 ㈜W에서 V에게 6,000만원 대여)	'21. 12. 24.
				합계	**75,000,000**		
				총 합계	**1,530,000,000**		